

## LINC사업단운영위원회규정

(폐지 2016.06.13.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에 의한 동명대학교 <녹색성장 선도형 IT융복합 기계부품소재산업고도화 산학협력선도대학(LINC)육성사업단> (이하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재원) 운영위원회 실시의 재원은 사업단의 재정(국고지원금과 대응부담금)으로 충당한다.

제3조 (정의) 이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사업목적 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로 필요에 따라 사업팀 및 센터별로 별도의 소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4조 (위원회의 구성) ① 사업단의 위원회는 사업단운영위원회,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위원회, 창업교육센터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.

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사업단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이 위원장이 되고,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위원회 및 창업교육센터운영위원회는 각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사업단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업팀장, 센터장, 외부인사, 사업단에 참여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, 산학협력중점교수로 하고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창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은 주관기관(교육과학기술부)의 운영지침을 따른다.

④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⑤ 사업단의 원활하고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 실행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있고 실행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, 사업팀장, 센터장,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.

제6조(소운영위원회) ① 각 사업팀장 및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업단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하며, 외부인사는 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구성 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③ 보직에 따른 위원 구성 시, 해당위원의 재임기간은 보직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사안의 긴급,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9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사업단 운영에 관한 기준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사업팀/센터 운영에 기준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

제10조(기타사항) ①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, 각 사업팀/센터 운영 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사업단 실행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결정, 진행할 수 있다.

- ②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관리지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6.26.]

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13일부터 폐지한다.

[별지1호 서식] 운영위원회 회의록

		녹색성장 선도형 동남권 IT융복합 기계부품소재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LINC사업단 운영위원회 회의록							
회의명									
일시									
장소									
의안									
토의내용 요지									
합의사항									
이견사항									
성명 참석 현황	참석 대상자	명	참 석 자 서 명	소속	직위	성명	소속	직위	성명
	참석자	명							
	불참자	명							
불참 내역									
작성자		소속 :			직위(직급) :		성명 :		